

#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복자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977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신복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  
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 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 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 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 
박 석, 봉양순, 서상열,  
오금란, 유만희, 윤종복,  
이병도, 이봉준, 이상욱,  
이성배, 이원형, 이종태,  
이종환, 이효원, 정준호,  
최민규, 최재란, 허 훈,  
황철규 의원(34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음.
- 또한,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 예방·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, 양육 방법 안내 및 가족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.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 내용의 기능을 추가하여, 발달장애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, 상담지원을 추가함(안 제10조제3항제5호의2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 
및 연계, 상담지원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 ·<br>② (생    략)<br>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<br>무를 수행한다.<br>1. ~ 5. (생    략)<br><u>&lt;신    설&gt;</u><br><br>6. ~ 12. (생    략)<br>④ · ⑤ (생    략) | 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 ·<br>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-----<br>-----.<br>1. ~ 5. (현행과 같음)<br><u>5의2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</u><br><u>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</u><br><u>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, 상담</u><br><u>지원</u><br>6. ~ 12. (현행과 같음)<br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|

#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현행 같은 조례 제10조 (발달장애인지원센터)의 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, 상담지원 업무를 추가한 것으로 각종 자료 검토결과 이는 **기추진 사업**<sup>1)</sup>으로 확인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과  
재정분석과장      이 선 희  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중 헌  
추 계 분 석 관     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**

1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복지실 2025년 <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> : 666,000천원

(단위: 천원)

| 과목구분  | 2025년 예산내역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민간위탁금 | ○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<br>666,000,000원 | = | 666,000 |

자료 : 2025년 서울시 복지실 예산설명서 발췌